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경관형성계획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충식 · 유주은*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 *한국농어촌공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ural Landscape Planning in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Kim Choong-Sik · Yu Joo-Eun*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Gangnung-Wonju National University

**Korea Rural Community & Agriculture Corporation*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landscape plans(LPs) established in th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s(RVDPs) and to propose the ways to improve the LP. Toward this end, the legal system related to rural landscape and the RVDP were examined. Also,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LPs was diagnosed through making researches on the RVDP and LP of the 10 regions.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legal system showed that the suitable types of the LPs is 'the Specific Landscape Plan' in Rural Area. Of the development projects that have been in operation, RVDP was found to have been equipped with the system. Because the LPs can be established and the contents of formation and readjustment of rural landscape elements were broadly dealt with in RVDP. And the RVDPs consisted mostly of scenery facilities, rural village sightseeing, and income-growth.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plan establishment procedures showed that the LPs were set up as subordinate plans of the RVDP, so structural problems such as the positions of the plans, inadequacy in the procedures of approval and collecting opinions were identified. Such problems were pointed out as the cause of the LP to deal with the contents of the basic designs of the RVDP. The schemes to resolve the problems are to give equal positions to the LPs and to the basic plans of the RVDP. Whe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reflected on the policies, the LP will effectively carry out the functions of formation and management of continued scenery preservation of rural villages.

Key words : Rural Landscape Planning,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Specific Landscape Planning

1.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관법’은 수립 과정부터 2007년 4월의 제정과 시행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농촌경관에 관련된 기관과 학계에서 경관법이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것에 대한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우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 국토를 도시지역으로 정의하고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농촌지역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고 보는 것과 동일한 연

장선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의 이용체계나 경관법 수립에 따른 농촌분야의 불만과 우려는 농촌이 지니는 환경적,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 경관법이 도시적인 내용과 방향정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농촌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고 보는 견해가 등장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와 같은 주무부서와 관련 연구기관에서 독립적인 농촌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농촌기본법’과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경관보전과 협정, 조례 등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관계획의 유형과 수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Corresponding author : Kim, Choong-Sik

Tel : 033-640-2478

E-mail : kcs@kangnung.ac.kr

‘경관법’은 경관의 형성과 보존 및 관리 등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며 국토 경관에 관련된 사항을 포괄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이므로, 수립체제와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농촌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의 수립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경관법은 지자체로 하여금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경관계획’으로 유형을 나누어 지역과 내용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농촌은 경관형성보다는 관리와 보존이 주를 이루는 지역적 특성이 강하므로 ‘기본경관계획’에서 다루기에는 범위가 넓고 선언적인 수준에 국한될 소지가 있다. 반면에 ‘특정경관계획’은 동일한 경관특성을 보이는 일정 범위나 대상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촌경관형성계획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성과 개발사업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적절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지역에 여러 개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시점이 비슷하여 상호 위계와 연관성이 없이 단기간에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¹⁾ 다수의 개발사업들이 상호 관련성이 미약한 상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농촌경관을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설정하는 경관형성계획의 수립은 도시지역보다 매우 절실하다.

또한 농촌지역은 관할구역의 전 범위에 걸쳐 대규모로 경관변화를 야기하는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경제적, 지역적 특성을 지닌 곳이다. 농촌지역은 주거와 생산, 문화, 자연자원이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사업효과가 크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과거의 농촌개발사업은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가 현재는 경제·문화·경관적 특성을 공유하거나 형성하는 권역이나 마을단위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는 시군개발계획이 사업의 방향과 지역별 연계성, 장래의 경관변화를 다룰 수 있다. 그러나 특정 권역이나 마을은 계획 대상을 선정하는 시점이 불분명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의 조달이 어렵고 계획 수립기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2008년 12월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해 ‘先농촌경관계획-後사업시행체제구축’의 정책방안을 발표하였다. 종합적인 추진체제로 ‘농촌경관지표제정’, ‘농어촌경관맵작성’, ‘농촌경관계획수립’, ‘경관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계획체제는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적용하여 계획단계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타 사업과의 연계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경관형성계획의 수립방향이나 지침,

시기와 내용이 설정되지 않았고 지역개발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농촌경관계획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서의 경관계획수립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는 제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취지로 볼 때 농촌지역에서 개발사업과 경관형성계획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²⁾ 개발사업은 성격에 따라 관할구역 전체나 일부를 범위로 하는 등 사업대상이 일정하지 않고 경관형성계획과의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계획유형과 계획수립체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의 개발사업은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이 대부분으로 「소도읍 육성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경관형성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사업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유일하다. 2004년부터 시행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특정권역을 설정하여 생활, 문화, 소득, 관광, 경관, 환경, 재해시설 등 농촌지역을 형성하는 경관 요소를 모두 다루고 있다. 그러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수립된 경관형성계획은 사업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어, 권역 내 수행되는 다른 사업이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서의 역할수행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위상적 한계로 인해 계획 내용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 또한 경관형성계획의 수립 시기와 절차, 승인과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위계가 정립되지 않고 있으며, 개발사업의 선행계획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관형성계획은 농촌지역에서 수립되는 권역이나 마을단위의 유일하고 시초가 될 수 있는 경관계획이라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2017년까지 1,000개의 권역을 선정하여 시행될 예정으로 농촌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사업이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9년까지는 정부가 지정한 대행업체에서 수립하고 있으나, 2010년부터 대행업체의 범위를 일반으로 확대·개방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관형성계획이 권역의 미래상과 경관형성의 틀을 제시하며 개발사업의 선행계획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된다면, 개발사업에 위계와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농촌지역의 경관보전과 관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

의 유형을 검토하고, 개발사업과 경관형성계획의 관계를 살펴보고 추진 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향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관형성계획을 살펴본 연구가 없어 경관형성계획이 수립된 권역을 대상으로 수립 내용과 위상을 구체적으로 진단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관형성계획의 수립 현황과 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경관형성계획에 필요한 법체계와 개발사업, 수립절차 등을 검토하였다.

법체계 검토는 문헌조사를 통해 농촌경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계획 수립지침, 현황 등을 조사하여 농촌지역에 적합한 경관계획의 수립방안을 모색하였다.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 농촌지역에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목록을 작성하고 사업의 특징과 대상, 사업 내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농촌경관형성계획에 적합한 개발사업과 운용체계를 제기하였다.

또한 농촌경관계획의 수립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 수립현황과 내용, 경관자원에 대한 세부사업, 경관형성계획 수립 현황, 특정경관계획으로서 농촌경관형성계획의 수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관형성계획이 수립·시행된 10개 권역의 기본계획보고서와 경관계획보고서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³⁾. 이와 함께 10개 권역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내역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농촌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관형성계획의 내용과 절차, 위상과 역할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⁴⁾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기 실행된 계획을 대상으로 농촌경관형성계획의 내용과 절차, 위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와 접근방법은 추후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는 항목의 검토를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I. 관련연구동향

국토라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주무기관과 전문가의 시각적 견해차이로 인해 적용되는 법체계의 상이 또는 중복되는 계획수립에도 불구하고 농촌경관을 정비·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농촌경관에 대한 연구는 농촌경관자원의 가치평가,

농촌경관계획 및 정책 등의 연구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농촌경관자원의 평가 등에 대한 연구로 한경수 외(2007)가 농촌경관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농촌경관평의 작성 방법 등을 제시하여 농촌경관계획이나 평가 등에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김상범 외(2006)가 농촌경관계획을 위한 공간별 주요 경관요소에 관한 연구를 통해 농촌공간별 경관요소의 인지도를 조사하여 농업생산, 농촌생활, 자연경관별 인지요소를 밝힌 바 있다. 이동근 외(2005)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농촌경관의 자원을 분류하고 자원의 가치를 평가한 바 있지만, 농촌경관계획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활용방안이나 정책적 반영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농림부(2002)는 GIS를 이용하여 지역자원의 매핑과 농촌경관평가모형을 작성하고 계획기법과 계획지침 등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계획에 응용된 사례를 찾기 힘들다.

농촌경관계획 및 정책에 대한 연구로 최근 주신하·임승빈(2008)이 농촌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 바 있으며, 주신하(2008)는 농촌경관계획 수립의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송미령·박정철(2005)은 외국의 농촌경관 보전에 관련된 정책이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 국내에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성주인(2005)은 농촌의 경관관리 실태에 대한 진단을 통해 조례, 법체계 등의 개정과 보안을 주장하였으며, 주민 참여 활성화와 경관협약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농촌진흥청(2008)은 농촌경관 보전 정책을 위한 관리기준 및 운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경관보전직불제의 대상을 기존의 농경지에서 전통담과 전통지붕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농촌경관자원의 우수성, 보존가치 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증대시키고 농촌경관의 중요성을 밝히는 정책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농촌경관계획의 현황과 적용가능성, 체계의 수립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같은 정부 추진 사업에서의 경관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농촌경관계획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농촌경관계획의 방향과 유형

1. 농촌경관계획의 방향과 유형

1) 법체계에 의한 농촌경관계획의 수립방향

농촌경관계획의 수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경관법’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지는 농촌경관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큰 틀을 가지고 있다.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신규개발과 비교적 대규모 개발을 고려하는 제도로 농촌경관의 관리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규모 이상과 기반시설연동제를 도입하였지만, 개발보다 관리와 정비사업이 주를 이루는 농촌마을에 부적합하다. 따라서 농촌경관의 특성에 따라 탄력성 있게 최소개발단위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되지 않고 있다(황한철, 2004).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도시경관계획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가 존재하고 있어 농촌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경관보전을 위해서 주택의 형태 및 색채에 대한 보전사업과 경관보전협약을 마련하고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수립할 수 있다. 그러나 경관형성계획의 법적 위상과 수립절차와 내용, 유형과 시행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경관에 관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지역의 총체적인 문제에 비해 경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방향 제시는 미흡한 상황이다.

한편 ‘경관법’은 해당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계획의 목적과 내용적 범위, 계획 수준에 따라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경관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기본경관계획’은 관할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경관계획의 목표를 제시하고, 경관 권역, 축, 거점 등 경관관리단위를 설정하며,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특정경관계획’은 관할구역 중 경관이 뛰어나거나 보전가치가 있어 계획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공간이나, 경관유형, 경관요소 등에 대해 수립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다. 특정경관계획은 관할구역 내의 일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특정 지역, 특정 경관유형, 특정 경관요소를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대상으로 한다.

법체제를 고려할 때 농촌지역에 대해 시·군 단위에서

경관형성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은 체제와 비용 등의 미비로 인해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므로 ‘경관법’의 수립 체제와 절차를 통해 비용을 지원받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관법’은 시·군 단위에서 ‘기본경관계획’의 대상을 관할지역 전체로 하고 있어 농촌지역에 한정하여 수립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법률에 따라 장점과 한계가 있으므로 농촌지역의 경관계획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촌지역의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경관형성계획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경관보전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반면에 농촌의 성격이 강한 지역이나 권역, 마을 등의 경관계획이 필요한 경우에 ‘경관법’에서 제안하는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지역개발사업과 경관계획의 유형

1980년대는 농어촌지역종합개발사업에 의한 군단위 경관조성 사업이 추진되는 시기였고, 1990년대는 정주권 개발사업을 통해 면단위 등의 농촌경관개선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등은 마을단위로 경관개선 및 재정비단위가 축소되었다. 그러나 2000년에 진행된 사업들은 관주도형의 하향식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정비모형으로 경관법이 추구하는 상향식의 주민주도적 경관개선의지를 반영하지는 못했다.

현재 경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행정안전부의 「패키지마을조성사업」, 「소도읍개발사업」, 산림청의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등이 있다.⁵⁾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도시민의 마을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마을단위로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마을에 1년간 지원되는 2억원의 사업비로 도시민 유치를 위한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관련사업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추진 마을은 지역개발 및 생활여건개선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정주권개발·전원마을조성·농어촌생활용수사업 등)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비와 시간상의 문제로 경관형성계획 수립에 적합하지 않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임을 촉진함으로써

써 농촌인구를 유지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마을의 규모에 따라 10~3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기본조사,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을 위한 세부설계, 문화재지표조사·시굴조사,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경관형성계획수립비 등의 비용이 지원된다. 진입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 공동주차장, 공원·녹지 등의 기반시설과 빈집 철거·정비, 마을회관 설치 등을 포함한다. 경관형성계획의 수립을 포함하고 있으나 주로 신규마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거 및 기반시설에 국한되는 사업이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읍·면과 준농어촌자치구 단위로 대상을 선정하여 25~30억원을 2~5년에 걸쳐 지원한다. 사업은 마을기반, 문화복지시설, 환경보전시설, 생산기반시설 등을 지원한다. 면개발계획 수립자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역별 중·장기 개발방향과 지역주민의 개발수요 등을 조사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므로 '기본경관계획'과 대상과 범위, 가 유사하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3~5개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마을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발전가능성이 있는 1,000개의 권역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패키지마을조성사업」은 농촌지역의 마을공동체의 역사, 문화,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물리적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마을정비와 주택개량을 주 사업으로 하며 주택개량 용자를 지원한다. 주로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사업으로 마을전체의 경관계획에 있어 소극적 양상을 보인다.

「소도읍육성사업」은 읍지역에 대해 테마를 특성화·전문화하여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012년까지 10년간 총 12조원을 투자하며 선정된 읍에는 3년간 100억원의 국고가 지원된다. 사업

내용은 도시기반확충, 주민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문화 및 관광육성과 관련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상향식 공모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향토기업단체·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과 성격이 유사하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은 산촌지역의 산림 및 휴양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원을 개발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14~16억원이 지원되며 주민역량강화, 주민소득, 생활환경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2012년까지 산촌생태마을을 300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대상이 산촌지역으로 제한된 것 이외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성격이 유사하며 마을별 경관계획수립도 가능하다.

농촌경관에 관련된 개발사업을 살펴본 결과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등이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2~3개의 마을을 권역으로 설정하여 계획하고, 「전원마을조성사업」은 단지 차원의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한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은 산촌지역에 국한되는 점이 다르다. 「소도읍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군과 읍·면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패키지마을조성사업」은 마을이나 권역단위를 대상으로 선정하므로 '특정경관계획'의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권역단위로 계획을 선정하고 경관형성계획의 수립을 포함하는 등 대상과 방법이 '특정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계획과 특정경관계획

1) 권역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 현황

Table 1 농촌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종류(2009년 8월 기준)

주관부처	사업명칭	범위	사업기간	근거법령 및 기타
농림수산 식품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마을	2004-2017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마을	2001-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전원마을조성사업	마을	1990-2013	농어촌정비법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군	1990-2013	농어촌정비법
행정 안전부	패키지마을조성사업	마을	1995-현재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소도읍개발사업	시·군	1972-현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산림청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시·군	1995-2012	산림기본법

10개 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보고서에서 분류한 사업별 비용의 배정상황을 살펴본 결과 평균 사업비는 62억 7,800만원이며, 경관시설사업이 12억 3,400만원(19.3%)으로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문화복지, 농촌관광의 사업비중이 크며 반면에 역량강화, 기초생활, 환경시설 등은 사업비중이 적은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10개의 모든 권역이 경관시설, 소득기반, 문화복지, 역량강화 등을 사업에 담고 있지만 기초생활, 운동휴양, 환경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권역들이 존재한다.

선동권역, 태산선비권역, 상그린권역은 경관시설사업이 주를 이룬다. 한편 홍부골권역, 대니골권역, 요선권역, 샘양지권역은 농촌관광사업의 비중이 높은 곳이다. 별주부권역과 배내골권역은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이 높으며, 봉강권역이 유일하게 소득기반사업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경관시설사업 비중이 높은 선동권역(전북고창, 2004)은 가로경관·야간경관·불량경관개선, 정자목 솎아내기 조성 등 환경시설(20.2%)의 비중이 가장 높고, 생태하천 조성 등 환경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에 대한 사업이 주를 이룬다. 태산선비권역(전북정읍, 2005)은 마을안길과 담장정비, 가로경관과 수변경관 조성, 선비문화관과 유상곡수 소공원 조성이 주를 이룬다. 상그린권역(충북증평, 2005)은 담장, 폐가, 주택정비, 가로수식재 등의 경관시설사업비가 34.9%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관광시설 사업비가 높게 나타난 홍부골권역(전북남원, 2006)은 홍부를 주제로 하는 관광시설인 홍부테마관 조성, 홍부생가복원, 홍부문화자원탐방로 등의 구성에 사업비의 30.6%를 배정하였다. 대니골권역(대구달성, 2007)은 충효체험관, 충효산책로, 체험농장 등의 농촌관광체험시설 구성에 사업비의 31.1%, 경관시설인 담장정비, 주택, 마을안길 등의 세부사업도 24.4%를 차지하고 있다. 요선권역(강원영월, 2007)은 농촌체험장과 문화휴양시설 등의 농촌관광시설이 25.1%, 문화복지시설인 도농교류센터 조성이 20.5%, 가로경관정비, 담장정비, 요선정주변경관개선사업이 17.0%의 순으로 비중이 높다. 샘양지권역(충북단양, 2007)은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으로 사동유원지 정비, 농촌휴양관광시설 조성, 야생동물 체험장, 다목적 사과체험장 등의 세부사업이 39.1%를 차지하며 문화복지, 경관시설의 비중은 매우 낮다.

문화복지시설의 사업 비중이 높은 별주부권역(충남태안, 2005)은 단일 시설인 별주부센터에 대한 사업비가 가장 크고, 염전체험장 등의 농촌관광시설과 지붕원색정비 등의 경관시설 정비에 대한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배내골권역(경남양산, 2007)은 매실 다목적광장, 산책로 개설 등의 문화복지기반시설에 32.4%, 마을경관정비, 돌담정비 등에 27.3%의 사업비를 배정하였다.

봉강권역(전남광양, 2007)은 농림특산물단순가공시설과 게르마늄새싹재배시설 등의 소득기반시설의 조성사업

Table 2 경관형성계획이 수립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권역의 세부사업 (단위:백만원)

지역	전북고창	충남태안	전북정읍	충북증평	전북남원	대구달성	강원영월	충북단양	전남광양	경남양산	평균	
권역명	선동	별주부	태산선비	상그린	홍부골	대니골	요선	샘양지	봉강	배내골		
수립시기	2004	2005	2005	2005	2006	2007	2007	2007	2007	2007		
사업비	총계	6,448	6,884	6,810	7,000	6,587	4,600	5,700	4,800	6,952	7,000	6,278
	기초생활	1,000 (15.6%)	740 (10.8%)	494 (7.3%)	1,055 (15.1%)	399 (6.1%)	98 (2.2%)	-	-	-	89 (1.3%)	554 (5.8%)
	문화복지	820 (12.8%)	1,581 (23.0%)	1,260 (18.6%)	1,368 (19.6%)	365 (5.6%)	516 (11.3%)	1,168 (20.5%)	844 (17.6%)	760 (11.0%)	2,262 (32.4%)	1,094 (17.2%)
	소득기반	400 (6.3%)	566 (8.3%)	786 (11.6%)	866 (12.4%)	1,079 (16.4%)	432 (9.4%)	228 (4.0%)	372 (7.8%)	1,671 (24.1%)	947 (13.6%)	735 (11.3%)
	농촌관광	325 (5.1%)	1,155 (16.8%)	150 (2.3%)	-	2,015 (30.6%)	1,427 (31.1%)	1,427 (25.1%)	1,874 (39.1%)	1,420 (20.5%)	-	1,224 (17.0%)
	경관시설	1,155 (18.0%)	800 (11.7%)	1,639 (24.1%)	2,438 (34.9%)	932 (14.2%)	1,118 (24.4%)	948 (17.0%)	273 (5.7%)	1,130 (16.3%)	1,911 (27.3%)	1,234 (19.3%)
	운동휴양	80 (1.3%)	-	450 (6.7%)	-	-	-	449 (7.9%)	-	-	192 (2.8%)	293 (4.1%)
	환경시설	1,300 (20.2%)	630 (9.2%)	800 (11.8%)	-	-	-	-	-	-	-	910 (14.1%)
	역량강화	706 (11.0%)	585 (8.5%)	475 (7.0%)	532 (7.6%)	499 (7.6%)	319 (7.0%)	496 (8.8%)	537 (11.2%)	600 (8.7%)	495 (7.1%)	524 (8.4%)
	제경비	662 (9.7%)	827 (11.7%)	756 (10.6%)	741 (10.4%)	1,298 (19.5%)	690 (14.6%)	984 (16.7%)	900 (18.6%)	1,371 (19.4%)	1,104 (15.5%)	933 (15.0%)

시하는 대상과 범위 설정과 유사성을 지닌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특정경관계획은 주체와 시기, 수준에서도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시에 범위를 설정하여 선택적으로 필요시에 수립할 수 있으며, 실행계획의 수준으로 작성된다.

대상과 내용을 살펴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권역의 기초생활시설, 경관시설, 농촌관광시설, 문화복지시설, 소득기반시설, 운동휴양시설, 환경시설 등에 대한 조성 및 정비 그리고 역량강화의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시설을 성격별로 분류하고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한

편 특정경관계획은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조명 등의 경관요소로 구분하고 있으며, 필요한 시설에 대해 선택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시설은 특정경관계획의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물, 색채 등의 항목에 해당하는 시설들이다.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은 특정경관계획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시설이다. 문화복지시설은 대부분 건축물과 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물, 색채 등의 계획대상에 포함된다. 농촌지역의 중요한 시설인 소득기반시설은 주로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색채 등이

Table 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계획과 특정경관 계획의 비교

구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계획	특정경관계획
목적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기초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역량강화	특정 지역이나 경관 유형 및 요소에 대한 보전과 관리 및 형성 방안 마련
범위	동일한 생활권이나 영농권, 역사문화적 동질권을 형성하여 주민간 동질성과 유대감을 갖는 소규모 권역	관할지역의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경관유형, 특정한 경관요소(농촌경관, 산촌경관, 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
주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시기	선택적으로 필요시	선택적으로 필요시
수준	실행계획	실행계획
대상	기초생활시설, 경관시설, 농촌관광시설, 문화복지시설, 소득기반시설, 운동휴양시설, 환경시설,역량강화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조명 등의 경관구성요소
방법	신규 조성 및 정비	규모, 형태, 재료, 색채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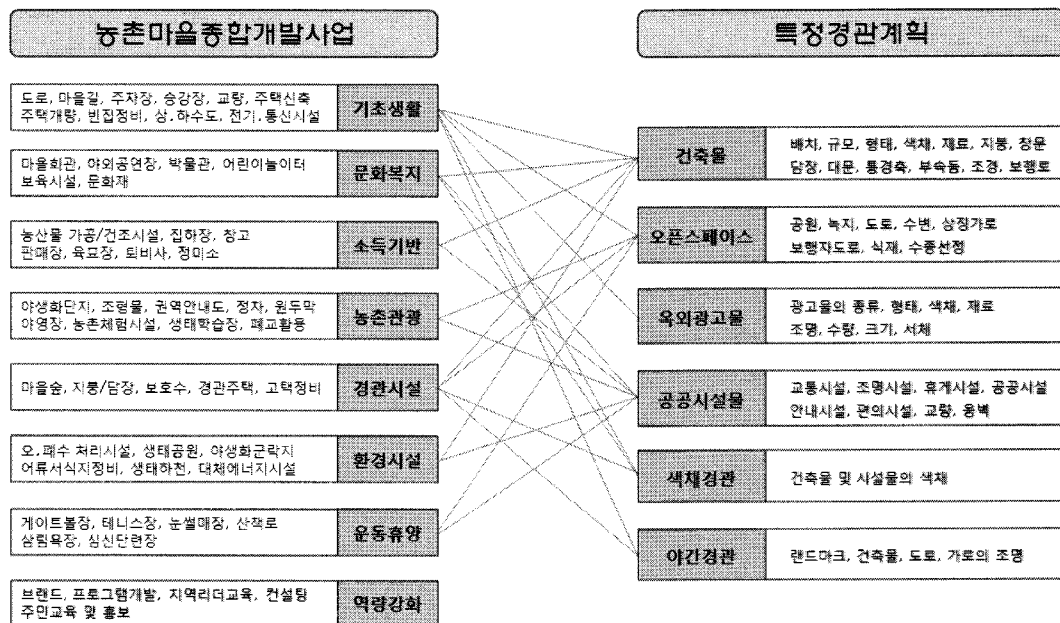


Figure 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계획과 특정경관계획의 대상 비교.

중요하게 된다. 농촌관광시설은 오픈스페이스와 건축물에 해당되며, 경관시설은 특정경관계획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시설이나 환경시설은 오·폐수처리시설, 대체에너지시설 등이 해당되지 않으며, 운동시설은 경관시설로 보기 어렵다. 역량강화는 주민교육과 체험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경관계획과는 무관한 항목이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특정경관계획을 비교한 결과 범위의 설정과 시기, 계획수준, 대상과 방법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상하수도와 전기통신시설, 오폐수처리시설, 역량강화 등은 특정경관계획의 항목과 무관할 수 있지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대상 시설 대부분이 특정경관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요소에 포함되고 있다. 그러므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수립 단계에서 경관형성계획은 '특정경관계획'의 수준으로 수립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관형성계획

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관형성계획 수립절차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총 178개 권역을 지정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중에서 경관형성계획은 10개 권역에만 수립되어 전체의 5.6%라는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경관형성계획의 수립 비중이 낮은 것은 권역의 여건상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마을단위 또는 권역단위의 경관형성계획을 세부사업의 하나로 수립하도록 지침에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기본계획수립자가 경관계획형성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시행계획수립 단계에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되는 경관형성계획은 수립권자나 승인이 모두 시·군에 위임되며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로 인해 경관형성계획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보다 1~2년 후에 수립된다. 선동권역, 별주부권역, 태산선비권역, 상그린권역 등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고 2년 후에 경관형성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처럼 경관형성계획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계획의 후속으로 수립되면서 경관형성계획은 계획의 틀과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경관형성계획 수립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실시설계 등과 병행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경관형성계획이 실시설계와 상호 병행되거나 수립 순서가 역전됨에 따라 어느 하나라도 변경이 되면 수정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어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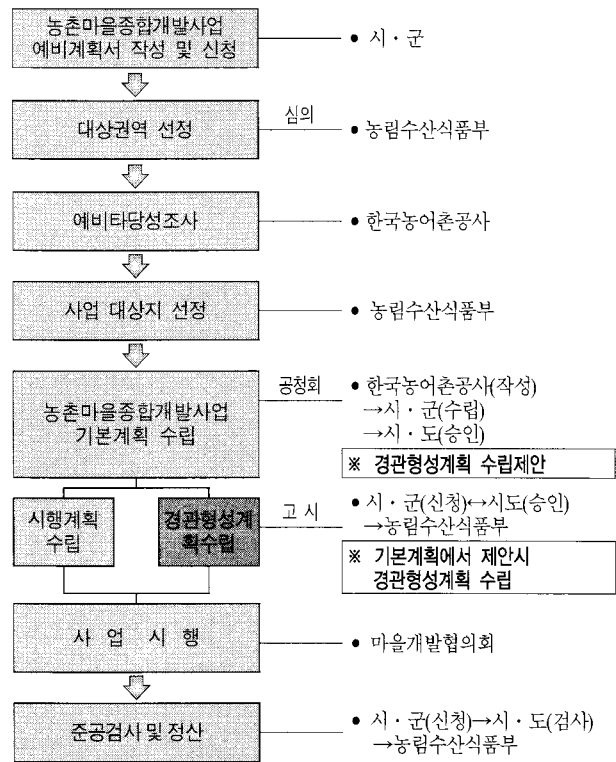


Figure 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수립절차(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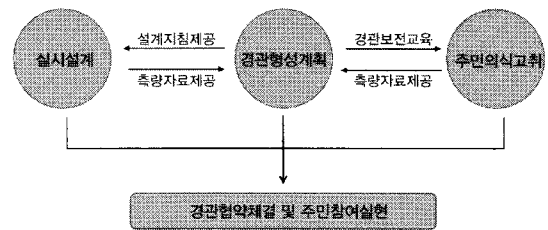


Figure 3 경관형성계획의 추진계획.

출처 : 한국농촌공사, 2007

현재의 절차적 한계를 내포한 상태에서의 경관형성계획은 실시설계 등의 사업 시행 하위단계에 계획의 틀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고, 계획 내용의 승인절차가 없어 하위 사업계획이 경관형성계획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경관형성계획의 절차와 위상적인 문제는 수립 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월 요선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보고서를 살펴보면 경관형성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사업과 내용을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관형성계획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제시한 세부사업에 대한 기본설계를 다루게 된다. 결국 경관형성계획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중간에 위치하는 모호한 위상을 지니고 있어 절차와 구조적인 한계를 벗

어나기 위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2) 경관형성계획 수립절차의 개선방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관형성계획의 주요한 문제점은 수립 절차상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경관형성계획이 특정경관계획 수준으로 수립되어 농촌지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수립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경관형성계획이 독립된 수립절차를 확립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방대한 자원조사와 설문,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참여 등의 중복 작업이 발생할 수 있다. 시간과 비용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의 증대시키는 방안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수립절차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수립절차의 개선방안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경관형성계획을 현재와 같이 병행하여 수립하지만 절차상에 있어서 부분적인 개선과 조정이 필요하다.

개선방안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단계에서 경관형성계획의 수립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할 때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기본계획과 함께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승인과 고시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이러한 수립절차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시행계획이나 실시설계의 상위계획으로서의 역할 부여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시행계획

이 경관형성계획의 내용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일관성이 유지되고 지속적인 농촌의 경관 형성과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촌지역에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적합한 개발사업을 찾고, 경관형성계획이 수립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권역을 대상으로 ‘특정경관계획’ 수준의 수립절차와 위상을 진단하였다. 법체계상으로 ‘도시경관계획’이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농촌지역의 경관을 관리하기 어렵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경관계획의 수립 절차 등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법체계적으로 농촌경관계획은 시·군 행정구역에 걸쳐 수립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 ‘기본경관계획’ 수준의 내용을 세밀하게 다루도록 지침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농촌경관의 특성이 중요한 지역이나 권역, 마을 등의 경관계획이 필요한 경우는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농촌에 시행되는 경관관련 사업들 중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특정경관계획 수준에서 농촌경관요소에 대한 조성 및 재정비에 대한 내용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한 10개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권역을 살펴본 결과 경관시설, 농촌관광, 소득증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업에서 조성되거나 정비되는 시설은 도농교류센터, 체험원, 마을길 등의 경관자원들이므로 경관형성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대상범위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동질적인 경관이나 문화적 특성을 나타내는 3~5개의 마을을 권역단위로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대상이 대부분 특정경관계획에서 다루는 시설에 포함되고 있어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경관형성계획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하위계획으로 위상이 설정되어 있고, 경관형성계획의 수립 여부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계획수립자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실시설계와 같은 시행계획과 동일한 시기와 위상으로 수립되고 승인,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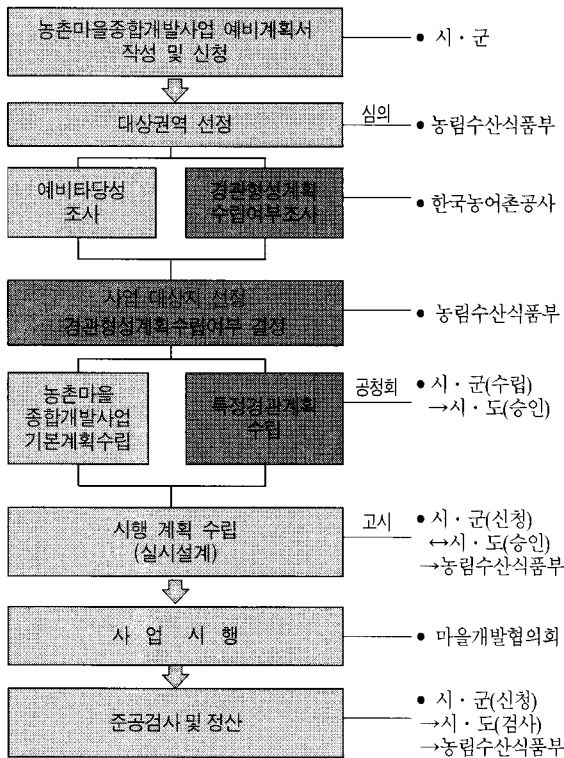


Figure 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수립절차(개선안).

로 인해 경관형성계획의 내용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실시설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수립절차의 부분적인 개선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선방안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경관형성계획을 동일하게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단계 등에서 경관형성계획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행계획의 상위계획으로의 위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상 정립을 통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경관형성계획은 권역의 경관보전과 관리, 형성이라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여타 사업과의 조율과 지속적인 지속적 경관개선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농촌경관계획을 규정하는 ‘경관법’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체계를 절충하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경관계획’의 수립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현재 두 법체계가 농촌경관계획에 대해 명료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상위법에 대한 접근이 명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추후에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구조를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되더라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는 단일사업에 국한되는 계획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관법’에 농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경관형성계획의 운영과 위상에 대한 정립과 승인 및 고시에 대한 제도마련과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주1) 강릉시 화산마을의 경우 정보화시범마을사업, 문화역사마을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이 2년에 걸쳐 시행되었으나, 사업주무부서와 시기가 다르고 사업대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위의 사업은 상호 연계성이나 위계를 검토할 수 있는 경관계획이나 마을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 주2) 농림부는 2006년 12월 「농촌경관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농촌경관형성계획은 ‘일정지역단위(공간)의 농촌경관에 대한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목표, 전략, 세부개선 방안 등의 종합적인 계획으로 마을, 특정 도로변(벨트단위), 읍·면, 시·군 단위로 수립이 가능하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촌개발사업과 민자유치사업 등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현재 정부가 농촌지역에 추진하는 농촌개발사업 중에서 시행범위와 규모가 가장 크므로 경관형성계획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 주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경관형성계획을 필요시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의 보고서로 만들어 진다. 현재까지 모두 한 농어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경관형성계획은 10개 권역 뿐이다.

- 주4)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들의 농촌 정비 관련 정책의 특징은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 환경과 경관의 질을 복원, 제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 주5) 2009년 8월을 기준으로 농촌지역에 시행되고 있으며, 농촌경관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하였다. 행정안전부의 「아름마을가꾸기시범사업」은 2004년에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농촌진흥청의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행 중이나 부엌, 화장실 등의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작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 주6) 경관형성계획이 수립된 10개 권역의 세부사업별 비중은 박관식 외(2008)가 2004-2007년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내용분석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참고문헌

1. 건설교통부, 2007, 경관계획 수립방향 및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
2. 김경량, 최윤상, 홍성규, 2006,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간평가체계 개발, 농촌계획, 12(2), 65-73.
3. 김상범, 이상영, 2006, 농촌경관계획을 위한 공간별 주요경관요소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2(3), 13-18.
4. 농림부, 1996,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계획지침.
5. 농림부, 1999, 농촌개발계획지침.
6. 농림부, 2002, 지역자원활용을 고려한 농촌경관평가 모델 작성 및 계획기법 개발.
7. 농림수산식품부, 2008, 2008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지침.
8. 농어촌연구원, 2004,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획 수립 지침 개발 연구.
9. 농어촌연구원, 2005,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획 수립 지침 개발 연구.
10. 농어촌연구원, 2006, 농촌경관의 보전·형성·관리 종합대책 수립 방안 연구.
11. 농어촌연구원, 2006,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지침 보급.
12. 농어촌연구원, 2007, 농촌경관 개선을 위한 관리 기법 및 지원방안 연구.
13. 농어촌연구원, 2008,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14. 농어촌연구원, 2008, 경관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의한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방안.
15. 농업기반공사, 2002, 환경친화적 농어촌정비사업 설계지침 - 농촌지역 경관정비편.
16. 농촌진흥청, 2008, 농촌경관 보전정책 수립을 위한

- 관리 기준 운용에 대한 연구.
17. 농림부, 2007, 농촌경관평가지표, 농촌경관매 및 경관보전협약의 현장 적용성 연구.
 18. 대한주택공사, 2006, 경관법 제정을 위한 연구.
 19. 박한식, 황길식, 김영택, 2008,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내용분석과 시사점, 농촌계획, 14(4), 121-128.
 20. 박헌춘, 김승근, 2008, 마을계획에 따른 농촌경관과 지역성 고찰, 한국농촌건축학회, 10(4), 31, 65-72.
 21. 반영운, 백종인, 김민아, 윤진옥, 2008, 전문가 델파이 설문 조사를 통한 농촌경관 유형분류 및 평가지표 개발, 14(3), 53-61.
 22. 성주인, 2005, 농촌 경관관리 실태와 정책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3. 송미령, 박경철, 2005,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정책 동향과 시사점, 농촌경제, 28(3), 121-137.
 24. 엄대호, 심완보, 윤진옥, 이충선, 2004, 경관보전직 불제 시범사업 시행방안 연구, 농림부 · 농업기반공사.
 25. 이동근, 옥주희, 홍찬선, 윤소원, 박창석, 유현석, 2005, 농촌경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경관자원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1(2), 21-34.
 26. 이정환, 남진, 2007, 농촌마을 유형별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의 계획내용 분석,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지 추계정기학술발표집, 957-965.
 27. 주신하, 임승빈, 2008, 농촌경관계획수립 기준 정립 연구, 농촌계획, 14(4), 69-76.
 28. 주신하, 2008, 농촌경관의 보전 형성 관리를 위한 정책제안 연구, 농촌계획, 14(4), 77-86.
 29. 한경수, 김기현, 전택기, 엄대호, 최윤상, 2007,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간 점검을 위한 평가지표 적용 사례, 농촌계획, 13(2), 121-132.
 30. 한국농촌공사, 2007, 영월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보고서.
 31. 황한철, 2007, 농촌개발사업의 추진실적 평가항목 선정 및 가중치 산정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3(2), 17-26.
-
- 접 수 일: (2009년 7월 14일)
 수 정 일: (1차: 2009년 7월 31일, 2차: 8월 19일)
 게재확정일: (2009년 8월 19일)
- 3인 익명 심사필